

입소계약에 관한 사항(파주요양원)

- 운영규정 제4장 제1,2,3,4,5절) -

제 4 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
제 1 절 계약기간

제41조 (계약기간) 대표자(또는 시설장)는 수급자의 서비스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.

- ①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(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등)에서 한다.
- ② 등급 변경, 계약기간 종료,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.
- ③ 장기요양인정갱신 및 장기요양수가 변경시 변경안내서로 대체할 수 있다.
- ④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.

제 2 절 계약목적

제42조(계약목적)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 3 절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

제43조(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) 월이용료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및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」에 따른다.

- ① 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,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(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)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.
-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 외의 식재료비, 이·미용료,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당시자의 동의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한 금액으로 한다.
- ③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월이용료 비용부담액은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.

제 4 절 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

제44조 (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) 입소계약 이행에 있어 신원인수인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.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.

-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
 1.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 2. 입소자에 대한 요양, 간호,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
3.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4. 입소자의 처우개선, 불편사항,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② 신원인수인의 의무

1.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.
2.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.
3.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.
4.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.
5.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.
6.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가 있다.

제 5 절 계약의 해제

제45조 (계약의 해제)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(또는 시설장)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가. 수급자(보호자)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-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-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나.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(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-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
-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-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- ⑤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-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- ⑦ 2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⑧ 시설의 규정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때
- ⑨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
- ⑩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. 단,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.

다. 수급자(보호자)는 가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‘시설’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(2025년 파주요양원)

2025년 파주요양원 이용안내

(2.1:1, 기준수가)

1. 등급별 보험급여 비용(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금액)

(단위: 원)

기관명	내용	1등급	2등급	3등급~5등급	비고
파주요양원	1일기준	90,450(18,090)	83,910(16,720)	79,240(15,848)	2025년 1월1일~
	30일기준	2,713,500	2,517,300	2,377,200	
	본인 부담금	일반(20%)	542,700	503,460	
		경감(12%)	325,620	302,080	
		경감(8%)	217,080	201,380	
		기초수급자	0	0	

2. 비급여 비용

항목	단가	30일기준		비고
식대(경관식)	4,000(1식) 일 3회	360,000		캔수량 무관 (해당자에 한함)
간식	1,500(2회)	45,000		
이미용료	월 1회	5,000		
소계		410,000		
기타항목	단가(1일)	30일기준	상급침실 또는 특별침실료 급식: 헬씨누리 CJ프레시웨이	
상급침실(1인실)	30,000	900,000		
상급침실(2인실)	10,000	300,000		
요실금팬티 등	실비기준(개인물품)			

3. 본인부담금 + 비급여 = 총 개인부담금

구분	내용	1등급	2등급	3~5등급	비고
공단부담금(80%)	30일기준	2,170,800	2,013,840	1,901,760	30일 기준
개인부담금 (본인부담금+비급여) 상급침실료별도	일반	952,700	913,460	885,440	
	경감대상자(12%)	735,620	712,080	695,260	
	경감대상자(8%)	627,080	611,380	600,180	
	기초수급자	0	0	0	

○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발생시 실비수납. ○ 거저귀는 요실금 팬티에 한하여 비급여임. ○ 상급침실료 별도

4. 계약의 진찰료

진찰구분	일반	감경/(8%/12%)	의료급여(8%)	기초수급자
초진비용(18,610)	3,680	1,470/2,200	1,470	0
재진비용(12,590)	2,630	1,050/1,570	1,050	0

5. 구비서류 및 준비물

1. 구비서류:

-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- 의료급여, 기초수급자수급증명서(수급자에 한함)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증
- 건강진단서(시설입소용) 감염성여부(결핵, 전염성질환 등)
- 의사소견서, 약 처방전(복용중인 약)

2. 준비물:

- 여벌 옷 4~5벌, 속옷, 양말 등
- 개별 욕창매트리스(해당자에 한함)
- 개인애장소품(액자 등)

○ 기타

주 소	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평화로 670(법흥리 170-9)
연락처	031) 949-8586, 팩스: 031) 949-8821
홈페이지	http://www.파주요양원.com
블로그	https://m.blog.naver.com/silvercare_paju
본인부담금 입금계좌	국민은행: 605737-01-011444 파주요양원

(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)